

방사선 안전관리 보상 규정

- 제정 : 2011. 8. 4.
- 개정 : 2015. 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 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의 교직원이 원자력 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규정을 정하여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교직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근로규정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재직기간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따른 보상규정) ①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교는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본교는 교직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교직원에 대하여서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시 년 1 회에 한하여 방사선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2-11 방사선 안전관리 보상 규정

제10조(보고) 본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 33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